부동산 세법 1

조세총론(1)

(기본서: P 24 ~ P 65)

교수 : 필립 홍 문 성

과정: 기본이론(1주차)



제1장 조세의 기초

01 조세의 정의 및 조세원칙

1. **조세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국고적 목적)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 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비보상성) 부과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 조세의 특징

- 1. 과세권자(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조세의 목적
 - ① 1차적목적: 재정수입(국고적 목적)
 - ② 2차적목적
 - 사회정책적 성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 ① 경제정책적 성격(개별소비세 등)
- 3. 과세근거: 조세법률주의
 - cf 조세법률주의: 반드시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 과세요건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 ① 과세대상 조세의 채권채무 관계 성립에 필요한 물적 요소(소득, 소비, 취득, 재산 등)
 - ② 납세의무자 납세할 의무를 가진 인격(자연인, 법인)
 - ③ 과세표준 과세할 대상의 가액 및 수량으로 세액산출의 기초
 - ④ 세율 과세대상별 세율 (일반세율, 특례세율, 중과세율)
- 5. 비보상성: 납부한 조세와 비례하여 주어지는 직접적 반대급부(개별적 보상)는 아니다. (공평)
- 6. 납부방법: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물납 및 분할납부를 인정하고 있다. ★★★
 - ① 물납: 재산세 관할구역 내 부동산, 상속세
 - ② 분할납부: 재산세(2개월), 종합부동산세(6개월), 양도소득세(2개월) 등

2. 우리나라 조세원칙

조세부과의 원칙

1. 실질과세 : 사실에 입각

2. 신의성실 : 납세자 세무공무원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3. 근거과세 : 조사한 사실에 따라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감면 이후의 확인감독

세법적용의 원칙

1. 세법 해석 : 재산권 부당 침해 주의

2. 소급과세 금지 : 성립 후 세법에 따른 소급적용 금지

3.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재량으로 수행시 적당

하다 인정한 한계 엄수

4. 기업회계 존중 : 기업회계의 기준, 관행을 존중

(특별규정시 예외)

1. 공부상 명의자 vs 실질 소유자 : 타인명의라도 사실상 해당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시 사실상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봄

- 2. 거래의 실질 내용 판단 : 형식상 기록, 거래 명의에도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 증빙, 거래당시의 정 황, 사회통념 등 고려하여 판단
- 3. 명의신탁자에 과세 : 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의 주체. 납세의무자는 신탁자에 있다.

02 조세의 분류와 조세체계★

구 분					세 목		
			보통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국		내국세	工る利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관 /	세					
		도세 시・군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_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도		보통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T I			목적세		-		
지 방 세	특 특별 별 .		보통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시 .	광역시세	목	덕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광 역	ت یا	보통	통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시	구 세	목적세		-		

** 국세와 지방세

	국 세		
개	개별소비세		
교	교육세		
통	교통에너지환경서		
특	농어촌특별세		모두
법	법인세		
부	부가가치세	신고	
상	상속세		
상 소	소득세(양도소득/	네)	신고
인	인지세		
종	종 합 부 동 산 세	+신고)	
주	주세		
증	증권거래세		
여	증여세		

	지방세 (도세)							
취	취득세	신고						
등	등록면허세	신고						
비	지방소비세	신고						
레	레저세							
교	지방교육세	모두						
원	지역자원시설세	모두						
	(시군세)							
주	주민세							
소	지방소득세	신고						
산	재산세	고지						
담	담배소비세							
자	자동차세							

2. 조세부담 전가에 따른 분류

- (1) 직접세(납세자 = 닦세자): 조세부닦의 전가를 예상하지 아니한 조세 예 소득세(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 (2) 간접세(납세자 ≠ 담세자) :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는 조세 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3.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

(1) 보통세: 조세가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조세 예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대부분의 조세,

(2) 목적세: 조세가 특정 경비에만 충당되는 조세

예 국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4. 인적 귀속에 따른 분류

(1) 인세: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조세 예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2) 물세: 과세대상별로 각각 과세하는 조세 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5. **과세표준의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과세대상을 측정한 수량 또는 가액)

(1) 종가세: 과세표준을 금액 또는 가액으로 표시되는 조세 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대부분의 조세

(2) 종량세: 과세표준을 과세물건의 수량, 중량 등으로 표시되는 조세 예 등록면허세 중 일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인지세 중 일부 등

6. 담세력에 따른 분류

(1) 수득세: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이나 소득에 대하여 과세

예 법인세, 소득세

(2) 재산세: 당해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예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등

(3) 소비세 : 소비라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4) 유통세: 권리, 재산등의 이동에 관한 행위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조세

예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7.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

(1) 독립세(=본세): 다른 세목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과세대상이 존재하는 조세

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대부분의 조세

(2) 부가세: 별도의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조세(=본세)를 부과할 때 부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

예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와 부가세의 세율 ▮

본 세	부가세 및 세율	본세의 감면시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 (2) 지방교육세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0%.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농어촌특별세 20%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20%	농어촌특별세 20%
재산세	지방교육세 20%	_
	농어촌특별세 20%	_
양도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20%

8. 조세의 체계 ★

(1) 우리나라 조세 체계

① 국가(국세):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도	특별시· 광역시		
구 분	도 세	시·군세 (광역시의 군 포함)	특별(광역)시세	구 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 부동산 관련 조세의 체계 ★★

구 분	국 세	지방세		
부동산 취득시 조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부동산 보유시 조세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사업),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부동산임대업),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부동산임대사업)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부동산 양도시 조세	양도소득세(개인, 비사업자), 종합소득세 (매매업, 건설업),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 부가세와 부동산 조세의 정리

		농어촌트	별세	지방교육세
	부가세	납부	감 면	납부
취	취득세	0	0	0
종 소 등	종합부동산세	0	-	-
소	양도소세득	-	0	-
등	등록면허세	-	0	0
산	재산세	_	-	0

납세편의	분납	물납
재산세, 상속세	2개월	0
종합부동세	6개월	×
농어촌특별세	본세에 준함	×
양도소득세.(종소)	2개월	×
증여세	2개월	×

부동산활동별		취득	보유	양도
부가가치세	부	0	0	0
인지세	인	0	0	0
농어촌특별세	특	0	0	0
지방소비세	비	0	0	0
지방교육세	교	0	0	-
종합소득세	소	-	0	0
법인세	법	-	0	0
지방소득세	소	-	0	0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비도사 하도벼 다도	LIMI	등록	재산세	
부동산 활동별 단독		면허세		
부인특비 교소	면소	상속세		-
		증여세		

*특이사항 : 토지 취득시 부가가치세 미발생 / 증여취득시 인지세 미발생 / 주택을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및 지방소비세 미발생

03 용어의 정리

- 1. **세법**, **조례**
- 2. 인격, 납세자, 납세지
- 인격
- 납세자
 - (1) 본래의 납세의무자
 - 예 취득자·행위자·소유자·소득발생자 등
 - (2) 연대납세의무자(수평적 관계, 동등관계)
 - 예 상속세에 대한 상속받은 자 상호간의 연대납세의무
 - 증여세에 대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연대납세의무
 - (3) 제2차 납세의무자(수직적 관계, 주종관계)

구 분	주된 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해산법인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	무한책임시원 또는 과점주주(50%초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법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양도인	사업양수인		

- ▶ 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서, 법인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 (4) 납세보증인 등 : 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
- ** 납세의무자 정리

연대 납세의무자	의무자의 납세능력 무관하기	과	본래의 납세의무자	의무자의 납세능력 이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무자는 서로 전액납	1납세의무에 대한 2이상의 납세의 무자는 서로 전액납세 의무가 있다. 법률 상속, 증여, 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또는 회피로 납세의	아의 납세의무 이행불가 리무 지는 자 또는 잔여재산 분배받
) : 이미 성립. 게 이전된 7 남세자의 조세. <u>가</u> - 보증한 자		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및 과점주주의 법인 수시 양수인		

- 납세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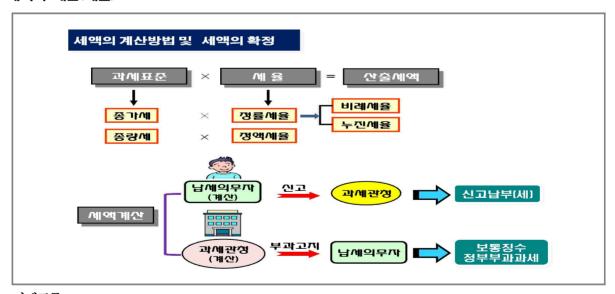
납세지란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곳으로서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 (관할 기자체)	국세 (관할 세무서)				
취득세, 재산세 개인 + 등록면허세, 법인 부동산소재지 지지	보동산소재지 지자체		종합부동산세		주소지 or 거소지 <mark>세무서</mark> 내국법인 - 등기·정관상
		0 H T 0 1	<u> </u>	법인	본점 or 주사무소 소재지 <mark>세무서</mark>
/ 기조리 . 그리조 / 이러나 100이 시간 기 드 레이				거주자	주소지 or 거소지 세무서
 ✓ 거주자: 국내주소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 ✓ 내국법인: 국내 실질적 관리장소 있는 법인 ✓ 외국법인: 국내 실질적 관리장소 없이 외국에 있는 법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개인 소득	비거주자	사업장 or 소득발생 <mark>세무서</mark>
			개인	거주자	주소지 or 거소지 지자체
		지방소득세	. —	비거주자	사업장 or 소득발생 지자체

3. 과세기간 (세법에 의하여 조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① 기간과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② 시점과세 : 취득세(취득할 때마다 과세), 등록면허세(등록할때마다), ...

4. **세액의 계산(세율**)



** 과세표준

- (1)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을 말한다.
- (2) 구분
 - ① 종가세: 과세물건의 가액이나 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조세
 - ② 종량세: 수량이나 면적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조세

- (1)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여 지는 비율(%) 또는 금액을 말한다.
- (2) 과세표준이 종가세는 비율(%), 종량세는 금액을 적용 한다.
- (3) 정률세율: 백분(천분)비율(%)로 표시되는 세율 ⇒ 종가세인 경우
- ① 비례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비율이 일정한 세율
 - 단순비례세율: 부가가치세(10%)
 - 차등비례세율 : 취득세, 등록면허세 일부, 재산세 일부, 양도소득세 일부
- ②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 크기별로 세율도 점증하는 세율
 - ① 양도소득세(6%~45%), (16%~55%), (26%~65%), (36%~75%)
 - © 종합부동산세(주택: 0.6%~3% 또는 1.28%~6%, 종합합산토지: 1%~3%, 별도합산토지: 0.5%~0.7%)
 - © 주택에 대한 재산세(0.1%~0.4%), 토지분 재산세(종합:0.2%~0.5%, 별도:0.2%~0.4%)
 - ▶ 재산세, 양도소득세는 차등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이 중복된다.
- (4) 정액세율: 화폐금액으로 표시되는 세율 ⇨ 종량세인 경우
 - 예 등록면허세(건수) 일부, 인지세 일부 등
 - ▶ 건수에 의한 등록면허세 건당 6천원

** 지방세 세율적용에 의한 분류

- 1. 일정세율 : 일정액 또는 일정율로 고정된 세율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세율에 관하여 아무런 조정도 할 수 없는 세율
 - 예 레저세
- 2. 표준세율 :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은 표준일 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가감할 수 있는 세율 예 취득세, 등록면허세(부동산 등기에 한함), 재산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 3. 제한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 이를 초과할 수 없는 최고 세율
 - 예 재산세중 일부(도시지역분)
- 4. 임의세율 : 현행 규정에는 없다.

** 세율정리 ★★

	정률세율	세율을 표시함에 있어 백분비율로 표시
● 과세표준 결정별	정액세율	세율을 일정액의 화폐금액으로 표시
	78 목세포	예) 종량세 (지목변경시 건당 6천원)
	비례세율	과세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세율이 고정된 세율
	<u>비네세월</u>	예)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 <i>크</i> 기별	단일비례세율	1세목의 세율이 동일한 율로만 적용
	차등비례세율	과세대상의 등급별 차등적 비율 존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u> 누진세율</u>	과세표준 크기가 증가할수록 세율도 증가
	단순누진세율	과세표준 전액을 구간별 최고세율을 적용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 초과부분만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역진세율	과세표준 크기 증가시 세율은 감소하는 형태 (현재는 없다)
●"지방세"만	일정세율	일정액, 일정률로 고정된 세율, 과세관자 가감조정 불가 (레저세)
	표준세율	세법의 세율은 표준이며, 법률이 정한 일정범위내 과세권자의 가감조 정 가능 (대부분의 지방세는 조정 가능)
	제한세율	세법에서 규정한 최고, 최저세율 의미. (상한선, 하한선)
	임의세율	과세권자 임의적 결정가능 세율 (현재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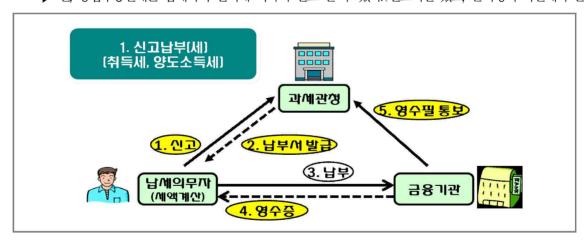
5. 부과와 징수 ★★★

용어정리 : 부과(부담하게 하는 것)와 징수(거둔다)

(1)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예 적용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분 주민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 단.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 할 수 있다.(신고기한 있고, 불이행시 가산세가 붙는다.)



(2) 보통징수 = 고지징수 [국세(종합부동산세)에서는 "정부부과과세"라는 용어를 사용함]

과세관청(세무공무원이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처분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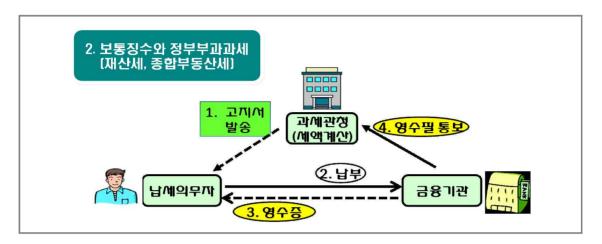
예 적용세목: 재산세, 균등분주민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정부부과과세=고지징수) 등

* 납세고지서란?

과세권자가 납부할 조세에 대해 부과의 근거가 되는 ① 법률 ② 납세의무자의 주소 ③ 성명.

- ④ 과세표준액, ⑤ 세율, ⑥ 세액 ⑦ 납기 ⑧ 납부장소, ⑨ 납부기한까지 미납 경우 조치
- ⑩ 위법 또는 착오시 구제방법 등을 작성한 문서.

* 고지서 발급시기	기한이 일정(재산세)	기한이 일정치 않으면	징수 유예시
<u>* 포시시 월급시기</u>	납기 시작 5일 전	징수 결정 즉시	유예가 끝난 다음날



(3) 특별징수(국세 - 원천징수)

조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 적용세목: 레저세, 근로소득세 등

(4) 납기 전 징수

과세권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서류의 송달**

- (1) 송달: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에 전달하는 것으로 주소, 거소, 사무소, 영업소에 송달
- (2) 방법: 교부(송달장소에 받을 자에 교부 / 거부시 다른 장소에 교부 가능), 우편, 전자송달 등 만일 만나지 못하면: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동거인 등 사리판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가능, 이때 수령 거부시 송달장소에 둘 수(유치송달이라고 함) 있다.
- (3) 서명 또는 날인 : 송달받은 자는 서명.날인해야 하고, 서명날인 거부시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 (4)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납부최고서를 송달해도 송달지연시 서류도달 후 14일이 지난 날로 납부기 한을 연장한다.
 - ① 서류가 납부기한 지난 후 도달 ② 도달한 날~ 지방세 7일 국세 14일 이내가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 (5) 공시송달 :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에 해당시 공시송달(납세자의 주거불명 따위 사유로 전달 어려울시 신문, 관보등에 게시)

사유 : ① 주소 등이 국외+곤란

- ② 주소 등 불분명
- ③ 우편 송달했으나 수취인 없어 반송되어 기한 내 송달 곤란하다 인정
- ④ 세무공무원 2회이상 납세자 방문, 교부하려 했으나 받을사람 없는 것 확인된 경우

** 세목별 신고 기한 ★★★

	구분	방 법	과세기간		신고기한
국세 +지방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 고	매년 01.01 - 12.31	확정신고 다음년도 5. 1 - 5. 31 (성실신고자 등록된 경우 : 다음년도 5. 1 - 6. 30)	
국세	양도소득세	신 고	매년 01.01 - 12.31	- 확정신고 : 양도가 빌 - 추징사유 발생시 : 시	생(속)한 달 말일 부터 2월 (부담부증여시 3월) 생(속)한 년도의 다음 년 05. 01 부터 05. 31 나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 부터 2월 남금 변동): 소송판결이 속하는 달 부터 2 고납부
국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신 고	2기: 07. 01부터 1	1. 1 - 3. 31)	확정신고 :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부터 25일 예정신고 :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부터 25일
지방세	취득세	신 고	취득 사건시	일반 : 취득일부터 6 : 비거주자인 경우)] 등기등록한 경우 : 등	0일 [상속시 : 개시일 달말 부터 6월 (9월 등기등록의 전까지
지방세	등록면허세	신 고	등록 사건시 등기.등록의 전까지 (추정사유 발생시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추징사유 발생시 사유발생일부터 60일)
국세	종합부동산세	고지	매년 06. 01 현재 (신고납부선택 가능)		H년 12. 1부터 12. 15 -정하나, 납세의무자 신고시 정부의 결정은
지방세	재산세	고 지	매년 06. 01 현재	개년 06. 01 현재 cf.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합산 고지 (부가세 아니다)	
예외	- 국세. 지방세. 기 남기 저 지수		정시 / 거래정지처분시	수금 징수 가능 처분시 / 강제집행 / 경매 / 법인해산 / / 납세자의 납세관리인 없어 국내에	
	지방세의 특별장수 지방세 국세를 국세의 원천장수		지방세 국세를 정	J수함에 있어. 징수에 픽	면의가 있는자가 징수하여 납입

7. 기산세와 체납처분과 결손처분

(1) **기신세** ★★★

- ①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조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2) 가산세의 종류와 가산세율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구 분		가 산 세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세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역외거래 100분의 60)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세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역외거래 100분의 60)

① 신고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 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1일 100,000분의 25).

② 고지에 따른 고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고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해당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 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② 국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하까지의 기간은 제외하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이 경우 징수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⑤ 지방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액의 1만분의 75를 가산하여 징수. 이 경우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고지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배제 세액

- ⓐ 국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고지세액이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 지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지방세 : 납세고지서에 따른 고지세액이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 지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산세 한도

- ① 국세: 그 의무 위반 종류별 각 5천만원(중소기업 아닌 경우 1억) 한도, 단 고의 위반시 제외
- ② 지방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한하여 한도 적용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frac{75}{100}$

*** 가산세 정리

신고불성실가	산세	신고납부만	비고
(공통)		해당	
	일 반	사 기 부 정	
무신고	20%	40%	부가세의 경우 본세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며, 부가
十 位平 	-> 0 3	후 결정 고지	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미포함
	를 받기	게됨	
과소신고,	일 반	사 기 부 정	
~ㅡcㅡ, 초과환급	10%	40%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중으로 재산의 비 확정으로 인
	-> 경정 고지를 받게		한 과소신고는 : 과소신고 및 납부 지연기 산세 비적용.
신고	됨		
* 사기 부경			

-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2.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또는 수취
-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 4.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5. 고의적 장부 미작성 or 갖추어두지 않은 행위.
- 6. 기타 위계에 의한 행위

신고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해당 조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mark>납부지연가산세</mark> 경우 산출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미납이다가소 연체 \times 인스 \times

고지에 따른 고지지연기산세 금액.

납부할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고지세액에 첫달 1회 가산하여 징수하는

미납한 지방세 X 3%를 고지세액에 가산 미납한 국세 X 3%를 고지세액에 합산

비적용: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에 대해 비적용.

고지에 따른 **납부지연기산세** * 지방세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

납부기한 경과한 날 ~ 매월 경과시 **지방세** $\times \frac{75}{10000}$ 을 가산하여 징수. / 최고 60개월 한

* 국세

미납세액 X 연체일수 × 금융기관 연체이자율 / 최고 5년

체납국세 100만미만 체납지방세 30만미만 인 경우(2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있으면 세목별 판단)

** 가산세 경감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제외

① 결정고지전 기한 후 신고자 - 신고기간 만료일 후 세금의 부과 고지 받기 전까지 신고한 자에 한해 무신고가산세 경감.(납부관련없음)

※ 기한 후 신고자 결정 통지 : 과세관청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 ~ 3개월 내

191 01111	1월초과	3월초과
1월 이내	3월이내	6월이내
50%	30%	20%

② 수정신고한 자 - 국세or지방세 부과고지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경감한 다. *납부불성실은 그대로 과세

1월	1월 초과	3월 초과	6월 초과	1년 초과	1년6개월 초과
이내	3월 이내	6월 이내	1년 이내	1년6개월 이내	2년 이내
90%	75%	50%	30%	20%	10%

③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 불성실자가 확정신고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50% 경감

- 과소신고 or : 예정.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한 자 :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하여 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경감

- 무신고 자 : 예정. 중간신고 기한까지 하지 아니하였거나 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경감.

(3) 체납, 체납처분과 결손처분

1. 체납처분 : 국가. 지자체가 조세등을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부쳐 징수금을 강제로 수입하게 하는 행정처분

2. 체납처분비 :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든 비용과 대행시 수수료 포함한 금액

- 3. 체납처분유예: 성실납부자로 인정,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 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인정될 때 유예하거나, 필요시 압류해제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하다.
- 4. 결손처분 : 확정된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 없다 인정되어 공식적 징수불능상태를 선언하는 행정처분. 단 이후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해야 한다.

8. 기간과 기한 및 징수유예

(1) 기간의 만료점

신고, 신청, 청구,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 다음날.

-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는 그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
- 기간을 주, 월, 년으로 정한 때는 역에 의해 계산
- 월. 연으로 기간을 정한 때는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는 그 월의 말일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 만료.
- 신고/납부의 기한일에 정보망 장애로 가동 정지되어 전자신고, 납부 불가시 복구되어 신고/납부 가능한 날 의 다음날.

	기한연장	징수유예
	신고, 신청, 청구, 서류제출, 통지, 납부, 징수 등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
	에 관한 기한	지하도록 하는 것.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①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도난으로
	도난을 당한 경우.	재산에 심한 손실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 중상해로 6	④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중상해로 장기치료
	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	를 받아야 하는 경우.
	중인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
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	
^1 유	우만 해당)	
"	④ 정전, 프로그램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⑤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 정보망이 정상가동이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불가한 경우.	
	⑤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영치된 경우.	
	[국세만] :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기타 부득이사유로 세금납부곤란하다 인정시	
-11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유예기간동안 가산세 적용을
혜 택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배제
4	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세 - 일반적 3개월 이내(재연장 1월의 범위	국세 -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국세 - 필인적 3개월 이대(세건경 1월의 쉽귀 내). 단, 신고/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월을	지 - 경구규에 궁글 설정한 달의 다듬달구니 9개월 이내로 한다.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정할수	1-11-1
	있다.	
	^^ '. 연장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6	
7]	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균등액을 분납	
간	하도록 정할 것	
	지방세 - 일반적 6개월 이내로 하고, (재연장 1	지방세 -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
	회 6월 이내)	월 이내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9. 과세최저한 ★★

(1) 면세점 : 과세권자의 부과권을 포기하는 제도.

즉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일정량 이하 또는 미만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

취득세	주민세 (재산분)	상속세 및 중여세	인지세
취득가액 50만원 미만	사업장 면적 330m² 이하	과세표준 50만원 미만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상 기재금액 1000만원 이하

(2) 소액징수면제 : 과세권자의 징수권을 포기하는 제도. 1세목별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이면 면제.(포기할 때의 기준세액)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		

10. 비과세와 면제

(1) 비과세 (=과세 제외 or 과세 금지): 과세권자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할수 없는 것.

(신고 등 납세절차 미진행)

(2) 면제: 법령에 정해진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하는 것

(3) 세액감면: 법률규정에 따라 조세를 과세한 후, 특정산업 육성 하는 등의 정책적 목적에서 세액의 일부, 전부를 감액하는 것. 즉 해당 산출세액에서 감면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서 차감.

비과세	법률이 해당 대상을 과세물건의 선택에서 배제
면제	법률이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선택, 과세함에 특별사유 있어 개별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

O X 문제 핵심정리 확인 문제

다.(O, X)

1.	조세부과의 1차적 목적(국고적 목적)은 재정수입의 조달에 있다. 하지만 조세는 상속·증여세, 소득세처럼 사회정책적 성격이나 개별소비세처럼 경제정책적 성격을 지닌 부차적 목적도 갖고 있다. (O, X)
2.	과세요건에는 과세대상·납세의무자· 을 과세요건이라 하며, 법률에 이과세요건이 규정된 경우에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조세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와 과세의 실질성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는 분할납부도 인정되고 있다. (O, X)
4.	과세표준을 과세물건의 가액(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조세를 라 하며, 수량(면적)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조세를 라 한다.
5.	신고납부(세)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를 부과한다.
6.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하는 조세의 종류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이에 속한다. (O, X)
7.	보통징수(지방세 징수방법)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출하여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말하며, 납부기한 내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를 부가한다.
8.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O, X)
9.	차등비례세율이란 과세표준의 대·소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의 종류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O, X)
10	.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O, X)

11. 취득과 보유·양도에 모두 공통된 조세에는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비세, 인지세가 있

* 정답

1 - 0 2 - 과세표준, 세율 3 - 0 4 - 종가세, 종량세

5 - 신고불성실가산세 6 - X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징수 원칙)

7 - 고지에 따른 고지지연 가산세 8 - 0 9 - 0 10 - 0 11 - 0